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공 보

제731호 2017. 6. 30.(금)

안내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10일 단위)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서구소식⇒ '서구공보'에서 열람

◇ 공보발행 절차

【원고접수마감】 매월 8일, 18일, 28일(D-2)

【편집】 접수마감 익일(D-1)

【게시】 발행일(D일)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날"발행되며,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람									

발행 : 대구광역시 서구 편집 : 문화홍보과(TEL : 663-2161, FAX : 663-2169)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260호 — 3

조 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6호 — 9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7호 — 13
⊙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8호 — 24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9호 — 31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0호 — 36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1호 — 41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2호 — 44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3호 — 47
⊙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4호 — 55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5호 — 59

규 칙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8호 — 65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9호 — 86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10호 — 103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11호 — 105

고 시

⊙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 25호 — 108
⊙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 고시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 26호 — 11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260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신설(안 제9조의2)

-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금 지급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도시재생과
- ❍ 전화 : 053-663-2823 / 팩스 : 053-663-2819
- ❍ 이메일 : munsuk88@korea.kr

나. 제출사항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① 구청장은 시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수막, 벽보,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수막, 벽보,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실비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 [대구광역시조례 제4937호, 2017.3.2., 일부개정]

제2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군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의해 설립된 옥외광고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6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cm)

구 분		길이
직 인	• 의회 의장의 인	2.4
	•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	2.1
	• 의회 사무국장의 인	2.1
청 인	• 의회의 인	3.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인과 관련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공인의 인영을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영의 내용(안 제3조)

-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체로 함.

○ 공고(안 제9조)

-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고 기관의 장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7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선과 모양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심의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건립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심의기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과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및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 조화 및 장소의 적합성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 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총괄부서담당국장과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실·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1조(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총괄부서 통보

2.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주관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건립 및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제3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 방법 및 비용부담(안 제4조 ~ 제5조)

○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안 제6조 ~ 제8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9조 ~ 제10조)

○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등(안 제11조 ~ 제12조)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8호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홍보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

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앞면] 제8조 관련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번호	서구 -
위 치	(시설명 : 000 공원, 00 학교)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별지 서식 뒷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관리현황			

【별표】

안내 표시문 (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 관리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 및 설치 장소 (안 제3조~제6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 규정(안 제7조)

○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 규정(안 제8조~제10조)

○ 영조물 배상기준(안 제11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69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

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고 현실에 맞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병무청 협조사항, 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내용, 「병무청 협조사항」내용 등 반영

2. 주요내용

○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신설(안 제8조제4항)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신설)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인정 개정(안 제18조제2항)

-「국민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에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

○ 출산휴가 관련 규정 개정(안 제23조제2항 및 제4항, 제11항)

-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육아시간 부여 시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개정(안 제23조제4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 자녀돌봄휴가 도입 신설(안 제23조제15항)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부여

○ 자녀가 군 입영을 하는 경우 특별휴가 실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6항)

-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녀가 군입영을 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 실시 규정 마련

○ 포상휴가제 도입(안 제23조제17항)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0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하며,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안 제1조)

○ 조례와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내용 삭제(안 제2조)

○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명시(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1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정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안 제3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2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4477호)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구세 감면 조례 기본안” 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 조정(안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6. 12. 27.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정비(안 제15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3호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하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공간과 조경시설물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텃밭형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한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옥탑, 발코니를 포함한다) 또는 벽면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써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 ① 구청장은 옥상녹화를 지원하려면 건축물소유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심을 나무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을 나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 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등록번호)	
	주소 :	전화/팩스	
		핸드폰	
		e-mail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정상태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개요**

건물명		준공년도		건축주	
주 소					
건물현황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				
옥상면적	㎡		녹화신청면적	㎡	
상주인원	명		이용인원	명/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				
사업 목적					
주 요 사업내용					
사업효과					

○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지출내용	소요금액	산출근거	비고
합 계				

○ 해당란에 v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도서가 있는 건물입니까? ① 준공도서가 있음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② 준공도서가 없음
2. 건물 준공 후 용도 변경,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변경시기 : 년 월 일 ② 변경내용 :
3. 옥상녹화 후 건물이용자 외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적극 개방 ② 예약방문에 의한 부분개방 ③ 개방불가 ④기타( )
4. 현 건축물의 용도는 ? ① 교육시설 ② 의료, 복지시설 ③ 문화시설 ④ 주거 ⑤ 상업, 업무용 건물 ⑤ 기타 ( )

※ 최근 구조진단과 방수처리를 실시한 신청자의 경우만 답변해 주십시오
5. 건축물 정밀구조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 ① 1개월전 ② 2~4개월사이 ③ 5~7개월사이 ④ 8~10개월사이 ⑤ 1년이상 ※ 건축물구조진단 보고서 보유 여부 (있다 / 없다)
6. 방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⑤ 아스팔트방수 ⑥ 기타( ) ※ 방수공사 한 일자 (개월 前)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옥상) 현황사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 (안 제5조)

○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안 제6조)

○ 건축물 소유자와 협약체결(안 제7조)

○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4호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구청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연초 업무보고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주민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안 제4조 ~ 제5조)

○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안 제6조 ~ 제7조)

○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역할, 회의 등(안 제8조 ~ 제11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75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국장과 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

을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퇴소조치·친권행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5조)

- 위원의 신분 규정 및 임기(2년, 2차례 연임)
- 긴급 사항에 대한 우선 조치 후 사후 심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8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

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

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

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구청장이 구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

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세입과목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세액			
세입과목 목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도) 구(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발의일 :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 · 군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관련 조문 및 서식을 분리하여 상위법령 및 조례에 맞도록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분리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고,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제1조 ~ 제4조)

○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에 의한 징수결정 처리 방법(제5조, 제6조)

○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소인, 납기마감처리 방법(제7조～제9조)

○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작성 및 세입징수 결과제출 방법(제10조, 제11조)

○ 세입마감 및 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처리 방법(제12조, 제13조)

○ 결손처분,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 결손처분 사후관리 방법(제14조 ~ 제16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각종 통지서 등의 전산처리 방법(제17조, 제18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9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구

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36조”를 “제14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10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116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의3”을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로 하고, “법 제128조”를 “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136조제1항”을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안내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1.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제4호 중 “2) 「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를 “2)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에 ”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

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1-2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1-3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을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2-1호서식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중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3-3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란의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39조”로 하고, 공지사항 란의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하며,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란의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소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일자	미교부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구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변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 기분	책호 /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지방세환급가산금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담당자	담당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담당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담당		충당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고,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등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및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제5조 및 제11조)

○ 부과취소 및 변경,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지급대상자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과 서식은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종전 제6조, 제7조)
-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종전 제8조～제10조)
- 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세 미수납액의 이월(종전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결손처분의 결정,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절차(종전 제21조～제24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10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계속해서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를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2017.3.23.)」과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기간 재연장시 명확한 기간 명시로 특혜 발생의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재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간 명시(안 제3조제3항)

- “계속해서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를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로 변경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형별 감경기준 및 증명서류(제3조 관련)

감경대상	감경 비율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50%	담당 공무원 확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0%	
등록된 장애인 1급~3급	50%	
등록된 장애인 4급 이하	30%	
국가유공자(본인)	30%	
70세 이상의 고령자	50%	
청소년 보호법 처음 위반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50%	전국조회 및 세무과 확인
해당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사법기관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검찰 및 법원의 발급 증명서 또는 공문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 (1만원 이하)	20%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서 또는 조서, 진술서 등 사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 (2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0%	

※ 다음 해당자는 과징금 미부과

○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통한 업무처리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으로 변경(안 별표)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 25호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83-2번지 일원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83-2번지 일원

나. 면 적 : 79,701.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명 칭 :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2, 2층(평리동)

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유순*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2(평리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48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7년 6월 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건축주택과 비치)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68,443.29㎡

나. 건 폐 율 : 16.68%

다. 용 적 률 : 241.27%

라. 높 이 : 100.85m

마.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바. 층 수 : 지하 2층 / 지상 35층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가. 규 모 : 공동주택 11개동 1,678세대

나. 주택형별 현황

구 분	공동주택		
	형별	전용면적(㎡)	세대수
분양	46	46.7225	92
	59A	59.6964	475
	59B	59.7679	55
	72A	72.9498	56
	72B	72.9266	200
	84A	84.9602	682
	84B	84.9602	118
합계			1,678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	20~23.5	보조간선	1,472	서구 비산동 대로2-5	서구 평리동 대로1-4	일반도로	건고제1387호 (65.02.02)	
기정	중로	2	390	15	국지	60	서구 평리동 1087-37	서구 평리동 1087-31	일반도로	건설부공고제63호 (72.08.08)	
기정	중로	2	391	15	집산	130	서구 평리동 1087-31	서구 평리동 1617-15	일반도로	건설부공고제63호 (72.08.08)	
기정	중로	2	392	15~20.5	집산	461	서구 평리동 중로1-4	서구 평리동 대로1-7	일반도로	대고제2008-142호 (08.09.10)	
기정	중로	3	406	13	집산	169	서구 평리동 1087-1	서구 평리동 1087-37	일반도로	건설부공고제63호 (72.08.08)	
기정	중로	3	407	13	집산	235	서구 평리동 1087-15	서구 평리동 1031-8	일반도로	건설부공고제63호 (72.08.08)	

나.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평리3동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평리3동 1075-32번지 일원	5,000.0	50	5,050.0	대고제2008-142호 (08.09.10)	-

10. 관계도서 : 별첨 (서구청 건축주택과 비치)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 26호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세출 결산내역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 산 액			326,819,000,000	321,400,000,000	5,419,000,000
예산성립후증감액			26,330,922,090	22,353,418,250	3,977,503,840
예 산 현 액			353,149,922,090	343,753,418,250	9,396,503,840
결산액	세 입		380,942,037,535	373,654,711,773	7,287,325,762
	세 출		291,226,733,140	288,429,028,920	2,797,704,220
다음연도이월액	계		89,715,304,395	85,225,682,853	4,489,621,542
	이월액	소 계	34,760,343,610	30,552,902,270	4,207,441,340
		명시이월	26,717,092,650	24,314,714,650	2,402,378,000
		사고이월	8,043,250,960	6,238,187,620	1,805,063,340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7,761,381,620	7,651,412,340	109,969,280
	순세계잉여금		47,193,579,165	47,021,368,243	172,210,922

◇ 2016회계연도 서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일 : 2017. 6. 20.